

의견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에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 시민사회단체입니다. 귀 기관에서 지난 5월 19일 행정안전부공고제 2020-327호로써 입법 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제2조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이견 없음

2. 제6조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제2항의 개정과 제3항 및 제4항의 신설 대해서 이견 없음

- 제6조의2 신설에 대해 이견 없음

ㄴ 다만 정보공개 업무의 경우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및 담당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과 제도이해,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욕구와 알권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가 제도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보공개제도 및 업무 교육의 주기적 실시를 공공기관 및 담당자의 의무에 포함시켜야 함. 따라서 정보공개제도 및 운영에 관한 주기적인 교육 의무의 신설을 요청함

3. 제7조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이견 없음

4. 제9조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견 없음

ㄴ 다만 현재까지 포괄적인 정보 비공개 조건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제9조제1항 각호를 악용한 정보 비공개 오남용 사례가 빈번함으로 정보 비공개 조건들을 전면적으로 세부화 하는 추가적인 개정안 보완 필요함. 이에 대한 내용은 첨부한 진선미 의원 의안의 제9조 부분을 참조해 보완하기 바람.

5. 제10조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제10조제1항제1호 안에 대해 이견 없음

- 제10조제3항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를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함. 또한 공무원 또는 담당자가 임의로 종결할 경우에 청구인의 알권리 침해가 발생하며 이미 이러한 사례들이 상담을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일방적인 종결에 대한 불복구제 절차 마련 없이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알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음. 따라서 종결처리 할 경우에는 담당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자세하게 작성 결제하도록 하거나 일방적인 종결 처리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10조제4항제1호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를 “해당 정보의 취득이 가능한 소재를 안내”로 수정이 필요함. 소재 안내가 정확하지 않거나, 안내된 정보의 소재를 방문하더라도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됨

6. 제12조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이견 없음

7. 제22조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이견 없음

8. 제29조의 신설에 대한 의견

- 이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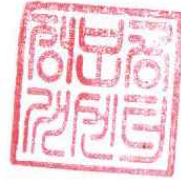
9. 기타 의견

- 거짓 정보 공개, 청구의 취하 및 변경을 요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6장을 벌칙”에 대한 신설을 요청함. 벌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형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기준으로 적용한 첨부 개정안의 제6장 벌칙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의 국정참여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정보공개심의회외의 외부위원 비중을 확대하며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진심어린 지지를 보냅니다. 다만 위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몇몇 부분에서 알권리 침해 위험이 발견되었으며, 보다 본질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발견됨으로 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적극적인 반영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담당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전화: 02-2039-8361

이메일: cfoi@opengirok.or.kr